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건명 : 노명숙 소유물건(2025타경1339)

감정평가서 번호 : 하나 250623-07-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HANA Appraisal & Advisory Co.,Ltd.

Tel : 033-748-7755 Fax : 033-748-7766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1, 602호 (무실동, 요진빌딩)

# (토지 · 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이관희



감정평가사  
 윤세봉

*윤*

*세*



봉 (인)

감정평가액	구역오백일십사만사천사백원정 (₩905,144,400.-)					
의뢰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엄정식		감정평가 목적	부동산임의경매		
제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노명숙 (2025타경1339)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7. 02	2025. 06. 23 ~ 2025. 07. 02	2025. 07. 07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종 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단 가	금 액
	토지	228	토지	257	-	237,918,000
	토지	8 116x-- 32				
	건물	388.8	건물	388.8	-	622,584,000
	제시외건물	(67.64)	제시외건물	67.64	660,000	44,642,400
		이	하	여	백	
합 계					₩905,144,4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

*기*

*홍*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북원여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7월 2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6월 23일 ~ 2025년 7월 2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II. 기타 참고사항

###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 2.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2)은 수 인 공유지분 토지로서, 귀 법원측 요청에 의거 전체면적 중 '노명숙'소유 지분만을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따라 면적사정하였음.
- ②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임.
- ③ 본건 중 일부 건물은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로 소유자 탐문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하여 이용상황을 추정 하였는바 입참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람.

##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514-21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8	228	1,000,000	228,000,000	
2	상동	514-23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8 116 X -- 32	29	342,000	9,918,000	현황 도로 노명속지분 전부
3 (가)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로 168-2	514-21 위 지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1층	76.32	76.32	1,320,000	100,742,400	1,500,000 x44/50
				2층	115.29	115.29	1,670,000	192,534,300	1,900,000 x44/50
				3층	110.97	110.97	1,670,000	185,319,900	1,900,000 x44/50
				4층	86.22	86.22	1,670,000	143,987,400	1,900,000 x44/50
	<b>소 계</b> <제시외건물>							<b>₩860,502,000</b>	
㉠	동 소	514-23	다락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옥탑층	(67.64)	67.64	660,000	44,642,400	
	<b>소 계</b>							<b>₩44,642,400</b>	
	<b>합 계</b>							<b>₩905,144,4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514-21 외 1필지	
토 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상용, 도로 등
	지 목	대
	면 적	257 m <sup>2</sup>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사용승인	2018.11.16
	연 면 적	388.8 m <sup>2</sup>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원주시 단계동 514-21	228	대	상업기타	2종일주	세로(가)	사다리 평지	1,002,000
2	원주시 단계동 514-23	116 X (8 / 32)	대	도로등	2종일주	세로(가)	사다리 평지	920,80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①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2)은 수 인 공유지분 토지로서, 귀 법원측 요청에 의거 전체면적 중 '노명숙'소유 지분만을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따라 면적사정하였음.
- ②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공시지가(원/m <sup>2</sup> )	비고
A	원주시 단계동 123-27	214	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가)	정방형 평지	656,800	-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고
#A 주거지역	0.4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5.01.01~25.07.02 ) 2025.01.01 ~ 2025.05.31 : 0.404 2025.05.01 ~ 2025.05.31 : 0.068  ( 1 + 0.00404 ) * ( 1 + 0.00068 * 32/31 ) ≒ 1.00474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97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에서 열세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7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주택지대 [일련번호2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0.33	본건은 사례 대비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33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본건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원주시 단계동 514-21	228	2종일주	대	2024.09.09	법원경매	996,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다)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2)	원주시 단계동 1**-**	152	2종일주	대	2023.04.17	공매	752,000	-
(3)	원주시 단계동 5**-**	230	2종일주	대	2022.04.21	경매	970,000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번표시는 생략함.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원주시 단계동 1**-**	2종일주 대	271,000,000원 (@ 1,040,000원/m <sup>2</sup> )	2024.05.03	261m <sup>2</sup>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271,000,000원 / 261m <sup>2</sup> ≈ 1,040,000원/m <sup>2</sup>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번표시는 생략함.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마) 경매 동향

용도별	강원 원주시 2024년 07월 ~ 2025년 06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근린주택	5,250,644,090	3,162,854,790	60.2	13	5	38.5
다가구			.0	8		.0
단독주택	12,330,811,835	6,082,470,500	49.3	97	26	26.8
대지	5,891,960,000	3,380,515,679	57.4	59	14	23.7

(출처 : 인포케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② 보정치 산정

#####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sup>1)</sup> (원/㎡)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752,000	1.02271	1.000	1.351	1,039,024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1.574	1.57
	656,800	1.00474	-	-	659,913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2)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3.04.17 ~ 2025.07.02, 원주시 주거지역) : 2.271% (1.02271)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2)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2) 대비 가로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에서 우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8	1.00	1.18	1.06	1.00	1.00	1.351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656,800	1.00474	1.000	0.970	1.57	1,004,981	1,000,000	-
2	A	656,800	1.00474	1.000	0.330	1.57	341,901	342,000	-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주거지역	1.4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4.05.03~25.07.02 )	
		2024.05.01 ~ 2024.05.31 : 0.135	
		2024.06.01 ~ 2024.06.30 : 0.116	
		2024.07.01 ~ 2024.07.31 : 0.144	
		2024.08.01 ~ 2024.08.31 : 0.152	
		2024.09.01 ~ 2024.09.30 : 0.107	
		2024.10.01 ~ 2024.10.31 : 0.149	
		2024.11.01 ~ 2024.11.30 : 0.110	
		2024.12.01 ~ 2024.12.31 : 0.111	
		2025.01.01 ~ 2025.05.31 : 0.404	
		2025.05.01 ~ 2025.05.31 : 0.068	
		$( 1 + 0.00135 * 29/31 ) * ( 1 + 0.00116 ) * ( 1 + 0.00144 ) * ( 1 + 0.00152 ) * ( 1 + 0.00107 ) * ( 1 + 0.00149 ) * ( 1 + 0.00110 ) * ( 1 + 0.00111 ) * ( 1 + 0.00404 ) * ( 1 + 0.00068 * 32/31 ) \approx 1.01499$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97	본건이 사례 대비 가로조건에서 열세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7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주택지대 [일련번호2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의 사례 대비 환경조건에서 다소 열세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0.33	본건이 사례 대비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33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1	1,040,000	1.000	1.01499	1.000	0.970	1,023,921	1,020,000
2	#1	1,040,000	1.000	1.01499	1.000	0.330	348,344	348,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고
1	1,000,000	1,020,000	-
2	342,000	348,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2. 건물 감정평가액

####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3 (가)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 주택	388.8	2018.11.16	중

부대설비 내역									
일련 번호	난방	냉방	위생	급배수	소화 설비	화재 탐지	승강기	도시 가스	기타
3 (가)	○	—	○	○	—	—	—	○	—

#### (2) 건물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 (3)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sup>2</sup> )	보정단가 (원/m <sup>2</sup> )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비고
3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00,000	-	1,500,000	50	1층
		1,700,000	200,000	1,900,000	50	2층~4층

※ 상기 기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01-01-05-09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749,000	50 (45~55)
03-01-05-09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2	1,583,000	50 (45~55)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2	1,984,000	50 (45~55)

### (4)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	내용 연수	경과연수		잔존 연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	비고
				실제	유효				
가	1층 (제2종근생)	1,500,000	50	6	6	44	44/50	1,320,000	-
	2층~4층 (제2종근생 및 다가구주택)	1,900,000	50	6	6	44	44/50	1,670,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237,918,000 원
	건 물	622,584,000 원
	제시외건물	44,642,400 원
	합 계	905,144,400 원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 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 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북원여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주상용 건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버스노선 및 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볼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  
일련번호(2) : 좁고 긴 형상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를 통하여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연결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br>(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br>(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br>(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3)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석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내부인테리어,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샷시 및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호 마감임.

### (2) 이용상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임.

###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2층~4층에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옥탑층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다락이 소재하며,  
본건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건물의 소유권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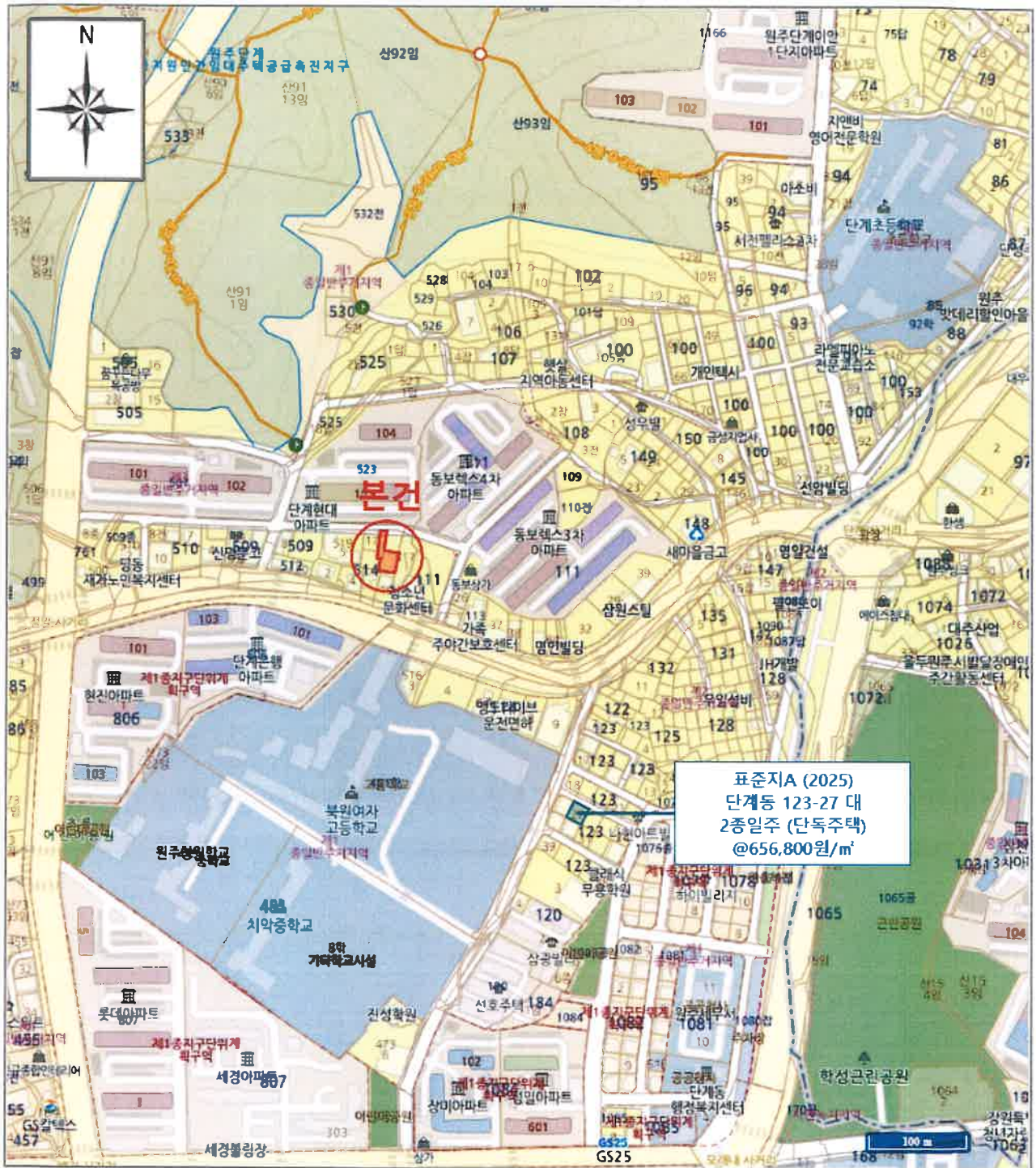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514-21 외



# 가격참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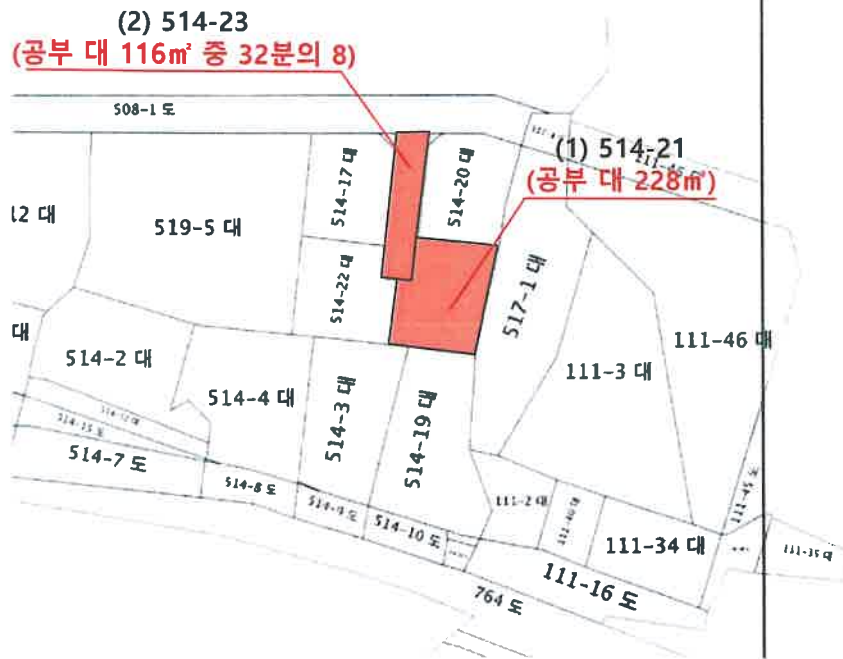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514-21 외



# 지적개황도



S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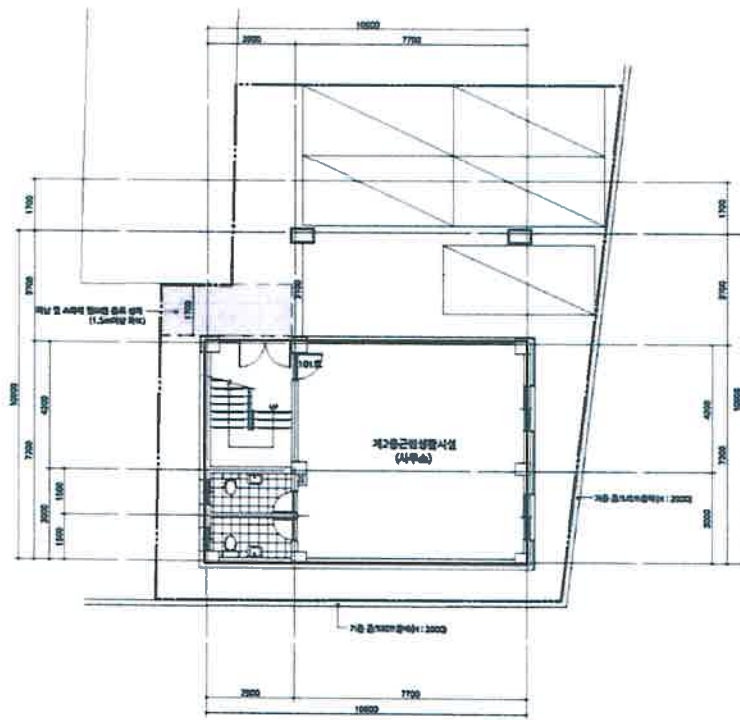


범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S : 1/250



[ 일련번호(3) 1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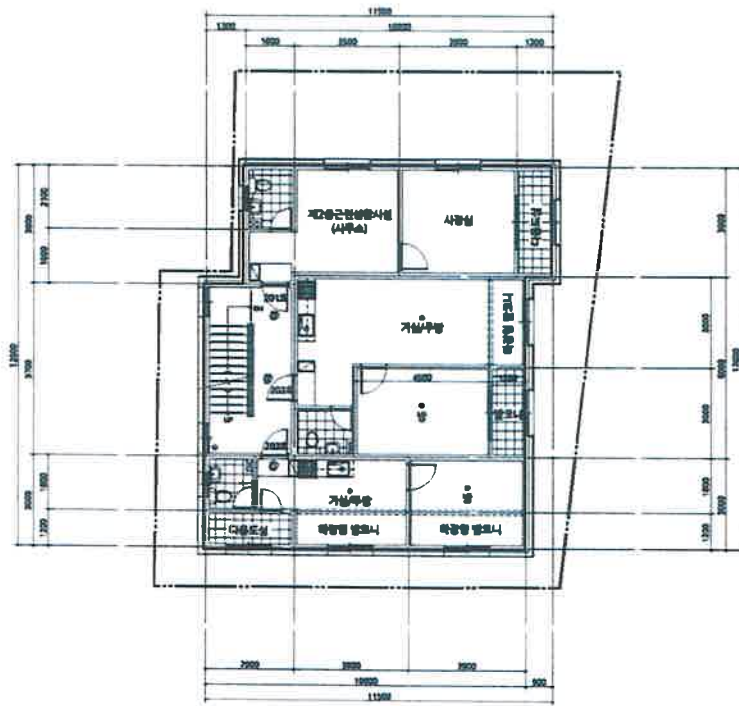
[면적산출근거]

일련번호(3) 1층 : 약 76.32㎡ (공부 76.32㎡)

#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S : 1/250



[ 일련번호(3) 2층 ]

[면적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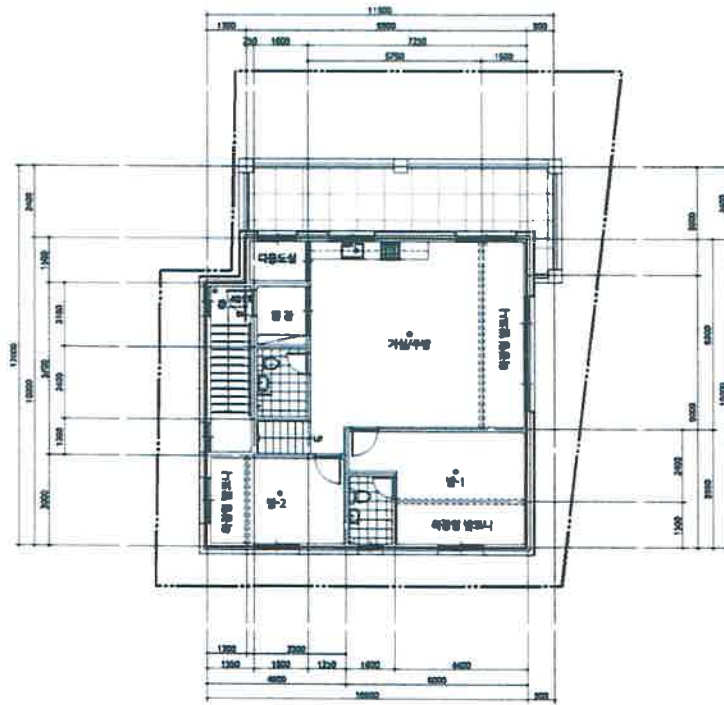
일련번호(3) 2층 : 약 115.29㎡ (공부 115.29㎡)



# 건물배치도



S : 1/250



[ 일련번호(3) 4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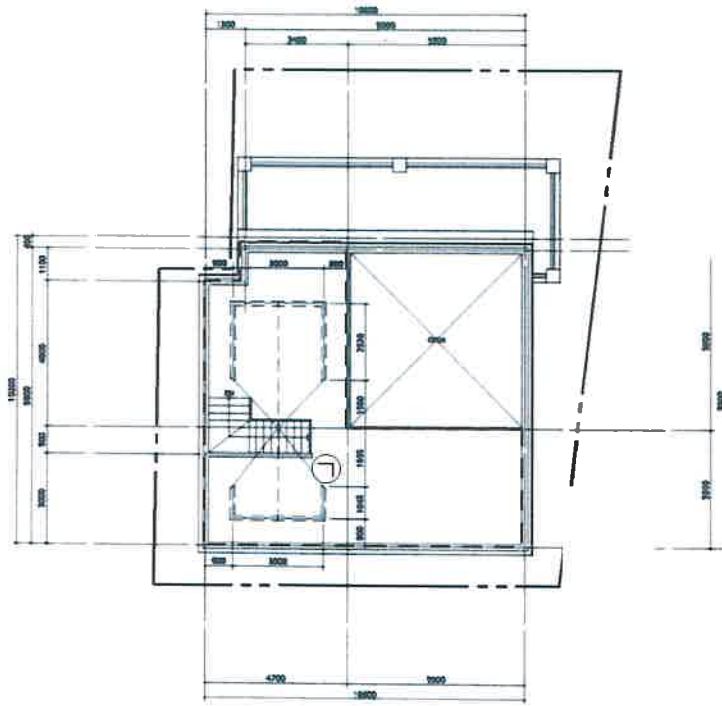
[면적산출근거]

일련번호(3) 4층 : 약 86.22㎡ (공부 86.22㎡)

# 건물배치도



S : 1/250



## [ 제시외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옥탑층(다락) 약 67.64m<sup>2</sup>

# 사 진 용 지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514-21 외
-----	--------------------------



전체전경



일련번호(1),(3)



일련번호(2)